

2014년도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확충사업 공고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퇴직과학기술자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확충을 위한 2014년도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확충사업」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문 기

1. 사업목적

-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퇴직과학기술자를 기술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채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확충 및 연구활성화 계기 마련

2. 사업개요

- 주관기관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최장 2년 10개월
*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인원 : 중소기업 당 1명 지원
 - 정부지원금 : 총 6,120만원(3차년까지 지원 받을 경우)
- 지원조건

<연차별 정부지원 및 기업부담금액>

구 분	1차년	2차년	3차년
지원기간	2014. 3. 1 ~ 2014. 12. 31(10개월)	2015. 1. 1 ~ 2015. 12. 31(12개월)	2016. 1. 1 ~ 2016. 12. 31(12개월)
기준연봉	10개월 기준 2,500만원 이상 (월 250만원 이상)	연 3,000만원 이상 (월 250만원 이상)	
정부지원금	1,800만원(월 180만원)	2,160만원(월 180만원)	2,160만원(월 180만원)
기업부담금	700만원 이상 (월 70만원 이상)	연 840만원 이상 (월 70만원 이상)	연 840만원 이상 (월 70만원 이상)

○ 신청자격

- 신청인력 : 사업공고일 기준 3개월전부터 접수마감일 사이('13.10.1~'14.2.15)에 채용된 자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선임급 이상 연구원(기술원), 대학 부교수 이상, 대기업 부설연구소 책임급(차장)이상 퇴직자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① 연구·기술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고용보험 및 경력증명서 기준)
 - ② 사업공고일 현재 만 50세 이상인 퇴직과학기술자
 - ③ 주별 3일(1일 8시간 기준)이상 중소기업 현장에서 근무가능한 자
- ※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채용된 인력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연구행정직 제외(이공계인력에 한함)

※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6. “공공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기술이전·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 대기업 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신청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고용보험가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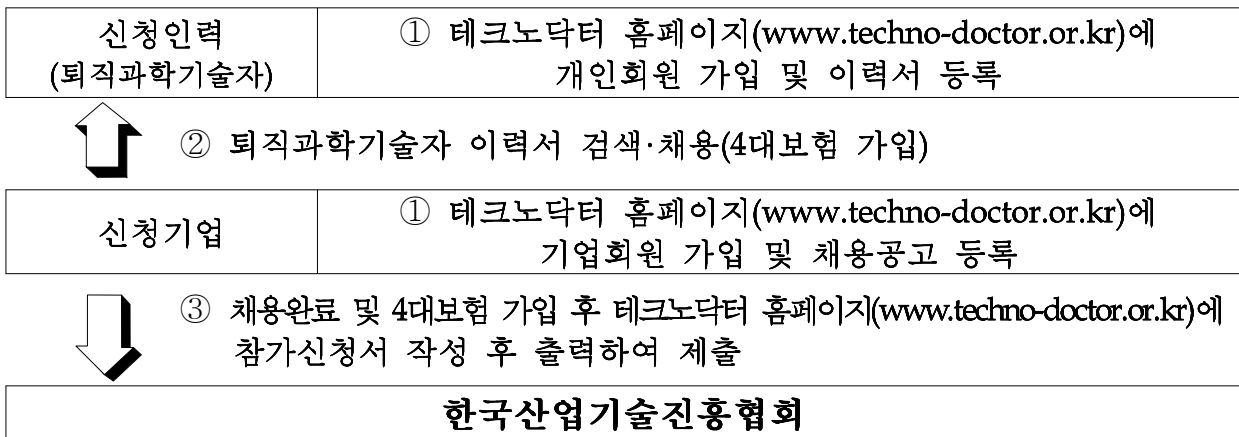
— <신청 및 지원 제외대상> —

- 최근 3년간(2011년 1월 1일 이후) 신청기업 또는 인력이 동 사업으로 2회 이상 중단사실이 확인된 경우
- 사업공고일 현재 당해기업에서 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 사업공고일 현재 신청인력이 신청기업이외에 민간 또는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신청인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및 대표자가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이 부채비율 400% 이상 또는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력이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사업종료후 동일기업의 기존 동일 수혜인력이 재신청한 경우

3. 평가방법

- 1차 : 신청기업 및 신청인력의 적격성 검토
- 2차 : 평가위원회 서면평가
 - 평가항목 및 기준
 - 기업부문 : R&D 투자율, 기업안정성, 기업부담금 등
 - 인력부문 : 특허·학회지 게재 논문 등
- 우대사항
 - 지방소재 중소기업
 - 신기술인증 보유 등 R&D 활동 우수 중소기업
 - 여성 신청인력 채용 중소기업
 - 이노비즈 인증기업
 - 퇴직 후 5년 이내 채용한 퇴직과학기술자

4. 신청방법



- 신청기업은 퇴직과학기술자 채용완료 및 4대보험 가입 후 테크노닥터 홈페이지(www.techno-doctor.or.kr)에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서를 접수한 후 출력하여 제출(관련 제반서류 반드시 첨부)
 -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간 : '13.12.31 ~ 2.15

5.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주 소 : (137-888) 서울 서초구 바우피로 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 전 화 : 02-3460-9122, 9123
 - 팩 스 : 02-3460-9129

6. 기 타

- 신청기업에 대한 선정결과는 개별통보 예정
- 상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테크노닥터 홈페이지(www.techno-doctor.or.kr) 공지사항 참고

《사업안내 관련 웹사이트》

- 미래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알림→공고→사업 공고
- 산기협 테크노닥터 홈페이지(<http://www.techno-doctor.or.kr>) 공지사항

복권기금 사업은 “작은 희망을 모아 큰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